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18. 4. 10.(화) 13:00~14:40

■ 장 소 : 진관사

■ 출석위원 : 박강철(위원장), 석대권, 장석하, 남해경
박선희, 김두규, 홍형순, 이정수, 황선철
(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고성 왕곡마을 내 농로 확·포장 | |
| 2 |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 신축 | |
| 3 | 안동 하회마을 내 세천 정비 | |
| 4 | 아산 외암마을 주변 산림 숲 가꾸기 | |
| 5 | 제주 성읍마을 주변 119센터 재건축 | |
| 6 |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버섯재배사 신축 | |
| 7 | 아산 용궁택 주변 임야 수종갱신 | |
| 8 | 홍성 사운 고택 축사 증축 및 용도 변경 | |
| 9 | 달성 삼가현 고택 주변 도로 건설 | |
| 10 | 함양 일두고택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
| 11 | 남양주 궁집 주변 종묘배양장 2동 신축 | |
| 12 | 화성 정시영,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 |
| 13 | 청주 고은리 고택 단독주택 8동 신축 | |
| 14 |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 |
| 15 | 영동 규당 고택 주변 단독주택 4동 신축 | |
| 16 | 영동 규당 고택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 | |
| 17 | 영동 규당 고택 주변 공영주택 건립 | |
| 18 | 예천 남악 종택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
| 19 | 예천 물체당 고택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
| 20 | 의성 소우당 고택 주변 농가주택 신축 | |
| 21 | 봉화 쌍벽당 종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김○○) | |
| 22 | 봉화 쌍벽당 종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김○○) | |

【검토사항】

- | | | |
|----|--------------------|--|
| 23 | 부안 김상만 고택 지정 해제 검토 | |
|----|--------------------|--|

【보고사항】

- | | | |
|----|-----------------------------------|--|
| 24 | 제주 성읍마을 내 용도변경 및 화장실 신축 허가사항 변경 | |
| 25 | 홍성 노은리 고택 활용 전통혼례 등 행사 개최 | |
| 26 | 대전 동춘당 종택 수목 제거 | |
| 27 | 나주 남파고택 헛간채 개축 | |
| 28 | 제주 성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 | |
| 29 | 영주 무섬마을 주변 무섬관광지 조성사업 도로선형 변경 | |
| 30 | 양주 매곡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 |
| 31 | 논산 명재고택 주변 애향공원조성사업 허가변경(교촌도로 연장) | |
| 32 | 예천 물체당 고택 주변 우사 증축 및 신축 | |
| 33 | 예천 물체당 고택 주변 우사 양성화 | |

심 의 사 항

1. 고성 왕곡마을 내 농로 확·포장

가. 제안사항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 왕곡마을」 내 농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성 왕곡마을 내 농로 확·포장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고성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 왕곡마을」
 - 소 재 지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왕곡마을길 41 일원
- (3) 신청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번지 등
- (4) 신청내용 : 농로 확·포장
 - 연장 : 374.5m, ○ 폭 : 3.0m, ○ T : 0.2m
 - 면적 : 1,489m², ○ 재질 : 콘크리트 포장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전문위원 ○○○/ 2018. 3. 2)

- 고성 왕곡마을 내 기존 농로를 확·포장하는 내용임
- 신청지는 고성왕곡마을 진입로에서 조망되는 곳으로, 기존 농로의 폭·높이를 변경하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진입로에서 약 20m 인접하여 있으므로 민속마을 경관에 어울리는 황토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2.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풍천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를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안건은 2014년 제2차, 제3차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되었으나, 고증없이 무분별하게 건물을 신축할 경우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 경관적 가치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불허처리 되었고
- 2015년 제6차 민속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였고, ‘추후 종합정비계획을 보완하여 나대지 별로 세부 검토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되었고, 2017년 제5차 민속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나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
- 2018년 제1차 민속-세계유산 합동분과에서 안동 하회·경주 양동마을 나대지 건물 신축 기준 검토를 심의하였고, ‘건축행위 신청 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1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 ○
- (4) 신청내용 : 초가 신축
 - 건축면적 : 안채 50.11㎡, 부속채 21.6㎡
 - 구조 : 한식목구조, 초가이영잇기, 높이 : 4.465m

※ 참고(2014년 2차, 3차 및 2015년 6차 민속분과 회의 신청 내용)

구 분	안채 면적(㎡)	사랑채 면적(㎡)	높이	심 의 결 과	사유
2014년 2차 민속분과	50.1	21.6	4.46m	부결	마을의 고유한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2014년 3차 민속분과	42.5	21.6	4.8m	부결	고증없는 건축물 신축은 마을의 고유한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높음
2015년 6차 민속분과	31.7	16.2	4.465m	보류	추후 종합정비계획을 보완하여 나대지별로 세부 검토후 재심의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7.9.28.)

-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내 마을 외곽에 초가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신청지는 하회마을의 외곽에 위치하여 대지로 되어 있으나 충분한 고증자료가 없으며, 전언에 의하면 최석암, 최종대가 살았던 가옥이 있었다고 함 (하회마을 정비계획에서 수정·보완된 내용임)
- 주변 가옥과의 연계성 및 마을의 경관을 저해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검토의견

- 신청건물은 신청인의 시부모인 정혜월이 거주하기 위하여 현상변경 신청하였으며, 주민등록초본 상 정혜월은 약27년 이상 하회마을 내 거주한 사실을 참고하여, 건물의 규모, 배치, 형태 등이 민속마을과 조화될수 있는 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바. 참고자료

- 붙임 : 민속마을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 지침(안)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민속마을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 지침(안)

제1장 총 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 수립)에 의거 민속마을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 지침을 마련, 예측 가능한 행정시스템 구현, 민속마을의 지속가능과 연속성 확보 등을 통해 민속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활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속마을 : 문화재보호법 제26조 국가민속문화재 중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을 말한다.
2. 나대지 : 현재는 대지이나 과거에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있었던 대지로 여기서는 고건축물이 있던 대지를 말한다. 행정순화 용어로 빈집터라고도 한다.
3. 관계전문가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4에 명기된 전문가를 말하며, 특히 여기서는 고건축 전문가로써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을 말한다.
4. 토지가옥증명서 : 1906년 칙령 및 법무령으로 정한 규칙으로 당시 토지가옥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5. 기류부 : 1962년 1월 주민등록법(1962.6월)이 제정되기 이전 기류법에 따라 시·도민증을 발급 운영하던 행정서식을 말한다.
6. 폐쇄등기부 : 새 등기부에 옮겨 적은 후 보관되는 등기부를 말하며, 조상 땅 찾기나 그 이외의 관리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민속마을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을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2장 건축행위 신청

제4조(신청 기준) ① 민속마을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은 실제거주를 위한 용도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실제거주 목적이 아닌 민박, 상가 등 상업적 용도를 위한 건축행위 신청 제한
2. 외지인에게 매매 등 투기 목적으로 건축행위 신청 제한

3. 주요 문화재 주변 또는 경관 요충지에 위치한 나대지에 건축행위 신청 제한

- ② 고증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민속마을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속마을과 조화될 수 있도록 규모, 배치, 형태, 기법, 경관 등을 고려한 관계전문가 자문을 선행하여야 한다.
- ③ 민속마을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 시 반드시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에 의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허가 후 건축물 신축 할 경우 그 경비와 유지관리하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④ 민속마을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 시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 환경 현상변경 검토 기준에 따라 주변 문화재의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고증 기준)① 시·발굴조사 결과, 과거 항공사진(1979년 이전), 폐쇄등기부 등 근거 자료가 있을 경우를 고증 기준으로 하며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고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자문 선행
- 2. 고증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각 호와 같다.

가. 관련자료 : 토지가옥증명서, 건축물대장, 초등학교 학적부, 기류부, 주민등록초본, 폐쇄등기부 등

제6조(신청 절차)민속마을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허가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3. 안동 하회마을 내 세천정비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세천 정비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동 하회마을 내 세천 정비 사업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안동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등
- (4) 신청내용 : 세천정비
 - 총연장 : 359m
 - 토공 : 터파기토사 : 230m² /되 메우기토사 : 190m²
 - 구조물공
 - 벤치플롭관(1000C) : L=353.0m
 - 개거(1.0*1.0~2.0*1.0) : L=6.0m
 - 콘크리트포장(B=3.0m) : L=66.0m

라. 현지조사의견(전)문화재위원 ○○○/ 2018.3.23)

-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내 농지의 기존수로를 벤치플롭관 및 개거로 설치하는 사항임
- 금번 신청 수로 구간은 2차에 걸쳐 정비한 구역과 이어지는 곳으로 1차 설계안(호안블럭과 둑 상부 시멘트 보도설치)을 보완한 2차 설계안(자연석 석축, 시멘트 보도 미설치)대로 하고 자연석 규격을 축소하도록 함
- 농로 포장은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을 농기계 운행이 어려운 경사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서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4. 아산 외암마을 주변 산림 숲가꾸기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주변 산림 숲가꾸기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산 외암마을 주변 산림 숲가꾸기 사업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1구역(개별심의/이격거리 380m)에 해당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산○○
- (4) 신청내용 : 숲가꾸기(면적 : 46,777㎡)

수 종	총 수량	제거목 수량	존치목 수량	간벌율(%)
소나무	516본	167본	349본	32.36
상수리	208본	7본	201본	3.36
기타활엽수	107본	24본	83본	22.42
합 계	831본	198본	633본	23.85

※ 작업방법

- 밀식된 임지에서 경합하거나 피압된 개체를 우선제거
- 참나무류는 쌍간목, 형질불량목, 단목형태로 소나무와 혼효되어 있는 임분을 제거
- 참나무류 중 폭목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제거
- 형질이 우량한 참나무류와 소나무는 제거하지 않음
- 작업여건이 어려운 곳은 제외함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2018. 3.13)

- 아산 외암마을 지정구역에서 380m 이격된 지역의 산림을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숲아베기하는 사업임
- 신청지는 아산 외암마을에서 조망되지 않으며 생육상태가 양호한 참나무, 소나무 등은 존치하고 안정된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수 대비 23.85% 숲아베기하는 사업으로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5. 제주 성읍마을 주변 119센터 재건축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주변 기존 119센터를 허물고 재건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주변 119센터 재건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2, 3구역(2구역 평지붕 신축불가, 경사지붕 7.5m이하/ 3구역 평지붕 5m이하, 경사지붕 7.5m이하/ 이격거리 240m)에 해당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 동부소방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 (3) 신청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 등
- (4) 신청내용 : 119센터 재건축
 - 부지면적 : 3,182㎡
 - 건축면적(연면적) : 384.22㎡(558.09㎡ [1층 374.92㎡, 2층 183.17㎡])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2층), 벽체 : 제주석마감, 스타코마감
 - 높이 : 7.5m(2층)
 - 지붕 : 평지붕+경사지붕, 송이깔기(차고지), 금속지붕(사무실)
 - 부대시설 : 조경식재, 주차장(10대), 공공하수관 연결
 - ※ 기존건물 건축면적/높이 : 234.18㎡/ 5.58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 2018. 3. 15)

-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에서 240m이격된 노후화된 119센터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하는 사항임
- 소방서건물 신축예정지의 허용기준이 2, 3구역에 걸쳐있으며, 건물형식이 평지붕건물이고, 건축면적이 384.22㎡로 공통사항(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을 초과하여 심의하는 사항임
- 금회 신청은 높이 면적 등이 초과되어 신청되었고, 이 구역이 성읍마을 초입에 건립되는 건물이므로 옥탑부 계단실을 조정하여 높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전면부 등을 경사지붕으로 조정, 벽체마감의 미장스톤 조정 등을 통하여 역사문화경관에 어울리도록 조정하도록 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에 따라 보완된 설계도면을 제출하였고, 보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가결

6. 아산 윤보선대통령생가 주변 버섯재배사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대통령 생가」 주변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산 윤보선대통령생가 주변 버섯재배사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2, 3, 4구역(2구역: 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3구역: 14m이하, 경사지붕 18m이하/4구역: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이격거리 관리사 245m, 진입도로 110m)에 해당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대통령생가」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1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산○○-○ 등
- (4) 신청내용 : 버섯재배사 2동 및 관리사 신축, 진입도로 개설
 - 사업부지면적 : 5,924㎡
 - 토공(흙깎기 토사 1,108㎡/흙쌓기 토사 11,373㎡), 배수공,
 - 구조물공(보강토옹벽 348.7㎡/H=0.7~3.5m), 포장공, 부대공, 조경공

구 분	건축면적(연면적)	높 이	비 고	비 고
버섯재배사 1	396㎡	5.45m	지상 1층	
버섯재배사 2	396㎡	5.45m	지상 1층	
관리사	199㎡	5.45m	지상 1층	
계 3동	991㎡	5.45m		

- 진입도로 개설
 - 배수공 : 용수로, 구조물공, 포장공
 - 옹벽(L형 H=2~3.5) : 538.3m
 - 아스콘포장 연장 : 461m, ▪ 폭 : 6~8m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2018. 3.13)

- 아산 윤보선대통령 생가에서 245m 이격된 낮은 구릉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버섯재배사 2동, 관리사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임
- 사업 내용에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가 다량으로 수반되며, 높이 0.7~3.5m 옹벽이 총연장 887m 규모로 설치됨
- 버섯재배사(2동)의 길이가 40m 이상이며 면적이 330m²를 초과함
- 상기 내용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 ※ 참고 : 허용기준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7. 아산 용궁택 주변 임야 수종갱신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용궁택」 주변 수종갱신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산 용궁택 주변 수종갱신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1구역(개별심의/이격거리 320m)에 해당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아산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용궁택」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528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산○○-○ 등
- (4) 신청내용 : 수종갱신
 - 면적 : 55,000㎡
 - 작업로설치 : 360m
 - 조림계획 : 백합나무 16,500본

수종	총수량	제거목 수량	존치목 수량	간벌율(%)
낙엽송	2,028	2,028	-	100
소나무	403	223	180	55.3
리기다	34	34	-	100
참나무	17	17	-	100
기타활엽수	1,478	1,478	-	100
합계	3,960	3,780	180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2018. 3.13)

- 아산 용궁택에서 320m 이격된 지역의 임야의 수종을 갱신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시각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신청지의 소나무는 임령 42년, 평균 가슴높이 지름 24cm, 평균수고 15m로 생육 상태와 수형이 비교적 양호함
- 따라서 소나무 223본을 제거하고 180본을 존치하는 계획을 존치목 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소나무 존치수량 조정

8. 홍성 사운고택 주변 축사 증축 및 용도변경

가. 제안사항

충남 홍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98호 「홍성 사운 고택」 주변 축사 증축 및 용도변경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홍성 사운고택 주변 축사 증축 및 용도변경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4구역(홍성군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름), 공통사항(분뇨처리시설 개별심의/ 245m 이격)에 해당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98호 「홍성 사운 고택」
 - 소재지 :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309번지
- (3) 신청위치 :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 ○ ○ - ○
- (4) 신청내용 : 축사 증축 및 용도변경
 - 축사 용도변경(1동)
 - 제 2동 퇴비사 → 톱밥우사, 면적 : 260㎡, 높이 : 5,800mm
 - 증축(기존 1동과 2동을 연결하는 비가림시설)
 - 면적 : 110.70㎡, 높이 : 5,800mm

라. 검토의견

- 기존 축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증축하는 사항으로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9. 달성 삼가현 고택 주변 도로 건설

가. 제안사항

대구시 달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 「달성 삼가현 고택」 주변 도로 개설을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달성 삼가현 고택 주변 도로 개설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 3, 4, 5구역(2구역 평지붕 신축불가, 경사지붕 신축불가/ 3구역 평지붕 신축불가, 경사지붕 6m(1층)이하/4구역 평지붕 8m(2층)이하, 경사지붕 11m(2층)이하/5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름/이격거리 약 79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 「달성 삼가현 고택」
 - 소재지 :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 792
- (3) 신청위치 :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 ○○○-○번지 일원
- (4) 신청내용 : 도로 개설
 - 연장 : 745m(※총연장 : 9.60Km)
 - ※ 기존지방도(남북방향) 67호선과 연결로 4개소 신설
 - 폭원 : 4차로(B=17.5m), 설계속도 : 본선80Km/hr
 - 토공 : 흙쌓기: 3.8만m²/ 흙깎기: 18.4만m²/ 순성토: 12.7만m²
 - 지하차도 : 1개소(L=21m)
 - 진출입시설 1개소(입체교차)

라. 현지조사 의견(전 문화재위원 ○○○ / 2018.3.23)

- 달성 삼가현 고택에서 79m 이격된 기존 2차선(동서방향)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기존 국지도(남북방향 67호선)와 연결하는 사항임

- 신청지와 문화재사이 남쪽으로 낮은 야산이 있어 바로 조망되지 않으나, 문화재에서 남동쪽으로 조망되는 도로변과 어귀의 회전 광장에 경관 및 차폐 식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에 따라 차폐식재 등 설계도서를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환경영향평가 서류 등 보완 후 재심의

10. 함양 일두고택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고택」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양 일두고택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경남 문화재자료 제360호 함양 개평리 노참판댁고가 지정구역과 인접하여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1구역(개별심의/165m 이격)에 해당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신청지는 개별심의구역이며, 기존소화시설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경상남도 설계승인(2012.4.5)을 받아 설치되었음
- 함양군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태양광발전시설 설계안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음(경상남도 문화재위원 ○○○, ○○○, 문화재전문위원 ○○○/ 2018.3.13)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고택」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번지
- (3)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
- (4) 신청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설치면적 : 19.2㎡(4000mm×4800mm)
 - 높이 : 최고 5,200mm(기존소화시설(높이: 1,900mm)위 설치)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2018. 3.26)

- 함양 일두고택에서 165m 이격된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모듈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신청지는 경남문화재자료 제360호 함양 개평리 노참판댁고가 지정구역과 인접하여 있고, 허용기준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 신청하였음
- 신청지는 개평마을 내 지방지정문화재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태양광모듈 설치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11. 남양주 궁집 주변 종묘배양장 2동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 주변 종묘 배양장 2동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1차/2018.2.13) 역사문화 경관지해로 불허된 사항으로 조망성 등을 고려하여 높이조정(4.6m→3.6m)과 수목차폐 등 당초(안)보다 개선하여 신청한 사항임.
- 2017.10.18(민속분과 5차)에서 주변 종묘(437번지) 배양장 조건부 허가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원지형 보존/이격거리 약 48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25-5
- (3) 신청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 ○ ○ - ○
- (4) 신청내용 : 종묘배양장 2동 신축
 - 규모 : 연면적 499.78㎡(주1동 308.68㎡, 주2동 191.10㎡), 최고높이 3.6m(1층)
 - 구조 : 경량철골조
 - 마감 : 샌드위치판넬(벽체, 지붕)

라. 검토의견

- 동 안건은 이미 조건부 허가된 평내동 437번지의 토지분할 지역 내에 종묘 배양장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지난 민속분과문화재위원회(1차/2018.2.13)에서 역사문화경관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되어 불허되었으나, 높이조정(4.6m→3.6m)과 수목차폐 등 당초(안)을 개선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12. 화성 정시영,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 화성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 제125호 정시영,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정시영,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이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이격거리 약 450m)으로 농경지의 경우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상정함.
 - 2구역 허용기준 : 평슬라브 8m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외의 건축물은 제한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 「화성 정시영 고택」, 제125호 「화성 정수영 고택」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8번지, 109번지
- (3) 신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번지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1동 신축
 - 규모 : 1동, 지상 2층(높이 7.8m)
 - 건축면적/연면적 : 71.25㎡/142.5㎡
 - 구조/마감 : 철근콘크리트조
 - 마감 : 콘크리트 옹벽+드라이비트 마감(외벽)) / 무근콘크리트(경사지붕)

라. 검토의견

- 해당 문화재와 450m 이격된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에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신축예정인 주택 규모가 허용기준 범위에 부합되며 또한,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13.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8동)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 주택(8동)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8동) 신축과 관련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 심의/이격거리 약 430m)으로 문화재 위원회 심의 대상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190-1번지
- (3) 신청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산 ○ ○ 번지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8동 신축
 - 규 모 : 8동, 지상 1층(높이 5.42m)
 - 건축면적/연면적 : 782.88㎡(97.86㎡×8동)
 - 구조/마감 : 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 마감 : 철근콘크리트+조적 마감(외벽)) / 오지기와(경사지붕)

라. 현지조사(2018.3.7/문화재전문위원 ○ ○ ○)

- 단독주택 신축 예정지가 해당 문화재로부터 직접적으로 조망되지는 않지만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으로 해당 문화재의 우백호 끝부분에 해당되며 신축(단독주택 8동)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절, 성토 등이 이루어져 주변경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14.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 주택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개별 심의/이격거리 약 450m)으로 문화재 위원회 심의 대상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산 190-1번지
- (3) 신청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산 ○ ○ - ○ ○ 번지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규모 : 1동, 지상 1층(높이 6.4m)
 - 건축면적 : 94.9㎡
 - 구조 : 경량철골구조
 - 마감 : 철골구조+판넬 마감(외벽) / 철골구조+아스팔트형글(경사지붕)

라. 현지조사(2018.3.7/문화재전문위원 ○ ○ ○)

- 단독주택 신축 예정지가 해당 문화재로부터 약 450m 이격되어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 끝부분의 경계에 위치하며, 그 사이에 구릉이 자리 잡고 있어 직접적인 조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15. 영동 규당 고택 주변 단독주택 4동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주변 단독주택 4동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동 규당 고택 주변 단독주택 4동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원지형 보존/이격거리 약 9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2017년 4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11동 신축 역사문화환경 저해로 불허
 - 2018년 1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4동으로 축소 신청,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외 2인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17-2
- (3) 신청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산○○외 1필지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4동 신축 및 주변 정비

	당초신청안 (2017년 4차 심의)	금회신청안 (2018년 1차 심의)
건축면적 *연면적동일	1,087.35㎡ (98.85㎡/동×11동)	395.40㎡ (98.85㎡/동×4동)
최고높이	각 동 1층, 6.5m	각 동 1층, 6.5m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벽체:적벽돌, 지붕:오지기와	철근콘크리트조 벽체:적벽돌, 지붕:오지기와
부지조성	해당 부지(20,537)㎡ 중 9,900㎡ 부지 조성	해당 부지(20,537)㎡ 중 5,165㎡ 부지 조성
부지 내 시설물	우수맨홀 7개, 우수관 232m,, 오수맨홀 7개, 오수관 254m, 트랜치 64m, 옹벽 539m, 아스콘포장 16.1a, 가드레일 243m	우수맨홀 3개, 우수관 100m,, 오수맨홀 3개, 오수관 110m, 트랜치 18m, 옹벽 165m, 아스콘포장 7a, 가드레일 89m

라. 현지조사(2018.3.7/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사업 신청지는 고택 배후를 감싸고 있는 야산의 말단부에 위치하며 해당 야산은 고택 전면의 영동천과 함께 고택의 입지형국(背山臨水)을 이루는 요소이므로 고택의 입지형국과 신청지의 경사도, 기존수림 등을 감안하여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사항('17년 4차 심의 시 관계전문가 의견, 문화재전문위원 ○○○ / 2017.7.26.)

- 동 현상변경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주변(90m 이격)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내에 단독주택 11동을 신축하는 사항임
- 사업 대상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대지 조성을 위해 다량의 절·성토와 절개 사면이 발생되어 당해 문화재로부터의 조망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16. 영동 규당 고택 주변 공영주차장 등 건립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주변 공영주차장 등 건립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동 규당 고택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4구역(이격거리 약 35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4구역 : 높이 3m 이상 절·성토는 개별 심의
 - * 2017년 6차 민속분과(2017.12.12) 심의결과 역사문화경관 저해로 부결된 사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동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17-2
- (3) 신청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산○○-○
- (4) 신청내용 : 주차장 조성(2,497㎡), 낙석방지책 설치(98m), 배수관로(L형 측구 250m)

구분	당초(2017.12.12/부결)	1안	2안
사업개요	부지 중앙부 절취 주차면적 : 2,497㎡ 최대주차대수 : 54대	부지 중앙부 절취 주차면적 : 2,497㎡ 최대주차대수 : 54대 경계식재, 사면안전공	부지 중앙부 절취 및 단 설치 주차면적 : 2,497㎡ 최대주차대수 : 45대
주민의견	기부채납한 토지를 최대한 활용, 인근 주차부지 협소로 최소 주차대수 50대 이상 설치 요청		

라. 현지조사 의견(2018.3.7/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사업 신청지는 고택에 인접하여 배후를 감싸고 있는 야산으로 인해 문화재로부터 직접적인 가시권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신청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산리 산 14-24번지'의 지목은 '도로'로 지정되어 있음. 다만, 신청지는 급경사지로 인해 다량의 절토공사가 수반되며 기존수림도 존재하고 있어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사항(2017.11.29/문화재전문위원 ○○○ 현지조사)

- 동 현상변경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에서 약 350m 이격된 현상변경허용기준 4구역 내에 주차장(부지면적 1,340㎡/승용차 52대) 및 1층 경로당 1동(부지면적 1,157㎡, 건축규모 및 형태 미정)을 신축하는 사항임
- 대상지에 신축예정인 주차장과 경로당은 허용기준(4구역) 범위에 충족되므로 현상변경 심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부지 조성을 위한 임야의 절토 높이(20m)가 공통사항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므로 심의 대상임
- 대상지가 허용기준 4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절토로 인해 문화재의 경관 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임야를 절토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면 등 주변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절토를 위한 발파 등의 과정에서 문화재에 대한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자문을 받아 시행
 - 사면 안정공 실시 설계 선행

17. 영동 규당 고택 주변 공동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주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동 규당 고택 주변 공동주택 건립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4구역(이격거리 약 265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4구역 : 높이 32m 이상은 개별심의 동건은 최고높이 41m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17-2
- (3) 신청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
- (4) 신청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284.63㎡/ 2,112.5100㎡
 - 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조, 지하2층, 지상 12층, 최고높이 41.12m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예정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4구역으로 주변에 유사한 높이의 아파트가 위치(현상변경 허용기준 지정 이전 건립)하는 등 이미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어 금회 신청한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해당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조망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18. 예천 남악종택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종택」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예천 남악종택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3구역(404m이격/도시계획에 의거 처리)에 해당 현상변경 심의를 요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3인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종택」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구계길 43-8
- (3) 신청위치 : 경북 예천군 용문리 직리 ○○○번지
- (4) 신청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설치면적 : 4,427㎡, 최고높이 2m, 설비용량 388.8kw

라. 현지조사(2018.3.26/문화재위원 ○○○)

- 본 사업은 제3구역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에 의거 지방조례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문화재현상변경 공통사항으로 심의되는 사항임
- 설치지역은 전면에 산이 있어 문화재로부터 조망되지 않으며, 절성토 등 지형변화 없이 설치되는 사업으로 역사문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19. 예천 물체당 고택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74호 「물체당 고택」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예천 물체당 고택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3구역(480m이격/도시계획에 의거 처리)과 500m를 초과하여 현상변경 심의를 요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74호 「예천 물체당 고택」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유천면 율현리 142번지
- (3) 신청위치 : 경북 예천군 율현리 ○○번지
- (4) 신청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설치면적 : 3,590㎡(김○○ 1,480㎡, 한○○ 2,110㎡)
 - 설치높이 : 1.3~2.7m
 - 설비용량 : 182.88kw(김○○ 91.44kw, 한○○ 91.44kw)

라. 현지조사(2018.3.26/문화재위원 ○○○)

- 본 사업은 제3구역과 역사문화환경 허용기준 외 지역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문화재로부터 조망되지 않으며, 절성토 없이 지형변화가 없어 문화재 역사경관에 저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20. 의성 소우당 고택 주변 농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의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37호 「의성 소우당 고택」 주변 농가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예천 남악종택 주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과 3구역(220m이격)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요청한 사항임.

※ 주변 2012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승인한 단독주택이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37호 「의성 소우당 고택」
 - 소 재 지 :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171-3번지
- (3) 신청위치 :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 ○ ○번지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 : 116.91㎡(연면적 96.99㎡), 지상 1층, 높이 6.55m,
 - 구조 : 경사지붕(점토기와), 목구조

라. 현지조사(2018.3.27/문화재위원 ○ ○ ○, 전 문화재위원 ○ ○ ○)

- 주변에 신청한 단독주택형태로 현상변경 허가 된 건물이 있고 역사문화 경관에 미칠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문화재로부터 조망되는 점과 기허가나간 사항 등 형평성 등을 고려 문화재위원회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가결

21. 봉화 쌍벽당 종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김동욱)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기존 불량주택 철거후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통 한옥 단독주택 건립 건으로 건립 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개별심의) 현상변경 심의를 요청한 사항임.
- 수온당 고택(지방문화재자료 605호)와 쌍벽당 사이에 위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 소재지 :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수1길 17
- (3) 신청위치 :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 ○ ○ - ○
- (4) 신청내용 : 한옥신축
 - 규모 : 건축면적 65.55㎡, 최고높이 5.65m(1층)
 - 구조 : 한식목구조, 5량가
 - ※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봉화군에서 50% 예산지원

라. 현지조사(2018.3.26/문화재위원 ○ ○ ○)

- 본 사업은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경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철거, 전통한옥방식으로 건립,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22. 봉화 쌍벽당 종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김선홍)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기존 불량주택 철거 후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통 한옥 단독주택 건립 건으로 건립 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개별심의) 현상변경 심의를 요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 소 재 지 :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수1길 17
- (3) 신청위치 :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 ○ ○
- (4) 신청내용 : 한옥신축
 - 규모 : 건축면적 65.72㎡, 최고높이 5.65m(1층)
 - 구조 : 한식목구조, 5량가
 - ※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봉화군에서 50% 예산지원

라. 현지조사(2018.3.26/문화재위원 ○ ○ ○)

- 본 사업은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경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철거, 전통한옥방식으로 건립,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검 토 사 항

23. 부안 김상만 고택 지정 해제 검토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줄포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50호 「부안 김상만 고택」 국가지정 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해제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50호 「부안 김상만 고택」 지정 해제 요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사)○○○○○○○○○○연합회(회장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150호 「부안 김상만 고택」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줄포면 교하길 8(줄포리)
 - 소유자 : ○○○ 외 3인
 - 수량 : 일곽(건물 8동, 토지 : 지정구역 1,224㎡ 보호구역 1,083㎡<12필지>, - 건축물 지정 : 8동

명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안채	조선시대	목구조 2고주 5량가, 정면7칸×측면2칸, 一자형 평면, 초가	79.02㎡	김병관외3인
안사랑채	조선시대	목구조 2고주 5량가, 정면3칸×측면3칸, 초가	39.85㎡	김병관외3인
바깥사랑채	조선시대	목구조 2고주 5량가, 정면4칸×측면3칸, 一자형 평면, 초가	58.62㎡	김병관외3인
헛간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 4칸, 측면 1칸, 一자형 평면, 초가	33.18	김병관외3인
대문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 5칸, 측면 1칸, 一자형 평면, 초가	32.44	김병관외3인
곶간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 5칸, 측면 1칸 一자형 평면, 초가	37.4	김병관외3인
화장실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 2칸×측면 1칸, 초가	12.0	김병관외3인
축사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 1칸×측면 1칸, 초가	3.24㎡	김병관외3인
계			295.75	

○ 연 혁

- 이 집은 교육가이며 언론인이자 정치가인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 1891~1955) 선생의 고택(故宅)이다. 1895년에 안채와 사랑채 및 헛간채를, 1903년에는 안사랑채와 곳간채를 지었고, 1984년에는 문간채를 증건하여 전체적인 평면은 ‘口’형이다. 안채와 사랑채는 앞퇴가 있는 구조로 기둥과 기둥 사이는 넓어 안정된 감이 있고 댕돌은 높지 않아 평편하고 넓다는 느낌을 준다. 초가이지만 실한 네모 기둥으로 당당한 주칸을 결성하고 넉넉한 부채를 써서 기와집 못지 않은 구성을 보인다. 이러한 구조에 지붕을 추가로 입힌 것도 이 집 특색 중 하나이다. 1982년 보수로 모래와 흙으로 발라진 사벽이 회칠한 분벽으로 바뀌었고 이엉이 역새로 바뀌어 현대적 느낌을 주고 있으나, 전라북도(全羅北道) 고창(高敞) 지방의 양식을 지닌 근대적 초가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국가민속문화재 지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가. 의·식·주에 관한 것

(3) 해제 요청 사유

- 인촌 김성수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박탈되었으므로 문화재 지정 해제 요청

라. 참고사항

(1) 인촌 김성수 친일반민족 결정처분(2017.4.13)

- 재판결과 : 일제 강점기 친일행적 인정(사건번호 : 대법원 2016두346)

- 국무회의 독립유공자 서훈 결정 취소(2018.2.14)

※ 보훈처 서훈 결정 취소에 따라 인촌생가 등 5곳 현충시설 해제(2018.2.28), 단 문화재와 중복 지정된 인촌생가와 김상만 고택의 경우는 별도 검토예정

(2) ○○○○○○○○○○ 연합회 요구사항

- 인촌 동상철거, 도지정문화재 및 국가지정문화재 해제 요청

- 추진경과

- 인촌 생가(도기념물 제39호) 는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해제 검토 예정(9월)

※ 지역 주민 의견 수렴(3월) 결과 지정해제 원하지 않음

- 부안 김상만 고택(국민 제150호) 지정해제 요청 건은 민속분과위원회 (2018.4.10) 해제 검토 예정

마. 의결사항

○ 부결

- 부안 김상만 고택의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근거가 고택의 거주 인물이 아닌 민속문화재(주거)적 관점에서 가치 평가로 지정되어있어 지정해제 요인에 부합되지 않음

보 고 사 항

24~33. 제주 성읍마을 용도변경 및 화장실 신축 허가사항 변경 등

가. 보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용도변경 및 화장실 신축 허가사항 변경 등 신청한 사항 등에 대하여 허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제주 성읍마을 (국민 제188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제주 성읍마을 내 용도변경 및 화장실 신축 허가사항 변경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 - 허용기준 : 지정구역 내 ○기허가 사항 : 건축물 2동 용도변경 및 화장실 신축 1 용도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 안채 - 면적/높이 : 65.00㎡/3.96m - 구조 : 단층, 잡석조, 초가 나. 창고 - 면적/높이 : 50.44㎡/3.77m - 구조 : 단층, 잡석조, 초가 2 화장실 신축 - 면적/높이 : 5.44㎡/2.786m - 구조 : 단층, 잡석조, 초가 단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화장실옆 도로쪽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도로쪽에 돌담을 설치할 것 ○변경 신청내용 : 건축물 2동 용도변경 및 화장실 신축 위치변경 1.용도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안채 - 면적/높이 : 65.00㎡/3.96m - 구조 : 단층, 잡석조, 초가 나. 창고 - 면적/높이 : 50.44㎡/3.77m - 구조 : 단층, 잡석조, 초가 2.화장실 신축 위치변경(북동쪽으로 약1.2m 이동) - 면적/높이 : 5.44㎡/2.786m - 구조 : 단층, 잡석조, 초가 단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화장실옆 도로쪽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도로쪽에 돌담을 설치할 것 ○변경사유 : 화장실의 위치가 도로변에 가까워 경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으로 1.2m 이동함	허가	'18.2.20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홍성 노은리 고택 (국민 231호)	충남 홍성	○○○	☐ 홍성 노은리 고택 활용 전통혼례 등 행사개최 ○ 위치 : 충남 홍성군 최영장군길 ○○-○○ - 당해 문화재 활용 ○ 신청내용 : 전통혼례 등 - 마을 및 고택 안내 - 전통혼례 체험 - 음식체험 프로그램 및 포토타임 - 행사기간 : 2018.3.31~11.24(총 50회) - 1회 행사 소요시간 : 90분 ○ 검토의견 - 화재 예방을 위하여 현장조리 등을 금지하고 문 화재훼손 및 안전조치 철저	허가	'18.3.19
대전 동춘당 종택 (국민 289호)	대전시 대덕구	○○○	☐ 대전 동춘당 종택 내 수목 제거 ○ 위치 :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 - 허용기준 : 지정구역 내 ○ 신청내용 : 가옥 내 잣나무 1그루 제거 ○ 검토의견 - 지정구역 내 안채 서측면에 잣나무 성장으로 인 하여 화장실 등 기존건물 파손 및 지반변형으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제거가 필요함 - 다만, 제거시 안전시설을 철저히 하여 문화재 등 주변건물 및 지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도록 함	허가	'18.4.5
나주 남파고택 (국민 263호)	전남 나주	나주시장	☐ 나주 남파고택 헛간채 개축 ○ 위치 : 전남 나주시 금성길 ○○ ○ 신청내용 : 기존 헛간채 철거 후 개축 - 주구조 : 목조(납도리 1고주, 5량가) - 지붕 : 초가지붕(이영잇기 3겹5단) - 건축면적/연면적 : 41.31㎡ - 최고높이 : 5.12m ○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의견대로 설계도서를 작성하되, 공사 시행시 기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행	허가	'18.3.22
제주 성읍마을 (국민 188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	☐ 제주 성읍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흥리 ○○ ○○-○○○ ○ 허용기준 : 2구역(평슬라브 신축불가/ 경사지붕 7.5m 이하 신축가능) ○ 기허가내용 - 건축면적 : 98.82㎡, 높이 : 5.55m	허가	'18.3.15

문 화 재	소 재 지	신 청 인	사 업 내 용	처 리 결 과	처 리 일 자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연도강판돌출잇기(경사+슬라브), 테라코트마감 - (문화재청)허가기간: 2016.8.11~2017.9.30 ○ 변경신청내용 - 건축면적 : 98.82㎡→<u>62.86㎡(35.96㎡ 감소)</u> - 높이 : 5.55m→<u>6.15m(0.6m 증가)</u>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연도강판돌출잇기(경사+슬라브), 테라코트마감 → <u>경량목구조, 경사지붕(100%), 아스팔트청글</u> - (문화재청)허가기간: 2016.8.11~2017.9.30/ · 서귀포시 허가기간 연장(경미한 사항) : 2016.8.11~2018.9.30 ▪ <u>금회 기간변경 : 2016.8.11~2019.3.31</u>		
영주 무섬마을 (국민 278호)	경북 영주시 문수면 탄산리	영주시장	□ 영주 무섬마을 주변 문수관광지 조성사업 도로선형 변경(변경허가)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탄산리 ○○○ ○ 허용기준 : 1(개별심의), 이격거리 : 지정구역 인접 ○ 기허가내용 : 문수관광지 조성 - 주요도입시설 : 운도박물관, 팔괘숲, 주차장, 무섬리 버카페 등 - 허가기간 : '13.10.10~'18.12.31 ○ 변경허가 신청내용 : 도로선행변경 ○ 도로선형 변경 - 관광단지에서 농로와 연결되는 회전 진입도로 중간 부분의 야외무대를 없애고, 선형을 직선으로 변경 - 변경도로연장 : <u>L=70m, B=9m</u> - 변경사유 : 도로부지 토지매입불가 및 주민의 선형개량 요청	허가	'18.3.15
양주 매곡리 고택 (국민 128호)	경기 양주시	○○○	□ 양주 매곡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 ○ - 허용기준: 1구역, 평슬라브 5m, 경사지붕 7.5m/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에 한함/약70m이격) ○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규모: 건축면적 83.64, 높이 7m - 구조: 경량철골조(칼라아스팔트싱글, 스타코플렉 마감) ○ 검토의견 - 2015년 민속분과 5차 가결된 사항으로 기간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 심의 요청사항으로 역사문화환경에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허가	'18.3.19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논산 명재 고택 (국민 190호)	충남 논산	논산시장	□ 논산 명재고택 주변 애향공원조성사업 허가변경(교촌도로 연장) ○ 위치 : 충남 논산시 노성면 노성산성길 ○ 신청내용 : 도로확포장 변경신청 - 당초 · 규모 : 폭 9.0m, 길이 659m · 기간 : 2017.4.14~2018.4.13 - 변경 · 규모:폭 9.0m, 길이747.2m(88.2m 증) · 기간 : 2017.4.14~2019.12.31 · 사유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기간연장 ※ 기허가사항 - 애향쉼터, 주차장시설정비, 기념마당, 노성풍류마당, 전통놀이체험터, 느티나무 쉼터, 다목적 잔디마당 조성 등 - 허가기간 : '17.2.20~'18.2.28 ○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회 기허가(2017.4월) 사항을 공사연장 및 구간연장 등으로 변경허가 요청사항으로 문화재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허가	'18.4.2
예천 물체당 고택 (국민 174호)	경북 예천군	○○○	□ 예천 물체당 고택 주변 우사 증축 및 신축 ○ 위치 : 경북 예천군 유천면 매산리 ○ - 허용기준 : 3구역(이격거리 440m) ○ 신청내용 : 우사 증축 및 신축 - 증축 1동 : 관리사(부 2동) · 구조 : 경사지붕 샌드위치판넬 · 높이 : 4m · 면적 : 18㎡→31.5㎡(13.5㎡ 증) - 신축 2동(부3동(퇴비사), 부4동(창고)) · 퇴비사 : 경사지붕,강파이프+ 철골조,높이 5.4m,면적 99㎡ · 창고:경사지붕,사이딩판넬구조,높이 2.9m,면적 11.25㎡ ○ 현지조사(2018.2.18/문화재전문위원 ○○○, ○○○) - 본건은 무허가축사 개선(양성화) 사업으로 당시 일부건물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현상변경 신청대상이 아니었으며, 금회 신청내용은 추후 증축과 신축한 사항으로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허가	'18.3.12
예천 물체당 고택 (국민 174호)	경북 예천군	○○○	□ 예천 물체당 고택 주변 우사 양성화 ○ 위치 : 경북 예천군 율현리 ○○○ - 허용기준 : 3구역(이격거리 360m) ○ 신청내용 - 구조 : 지상 1층, 경사지붕, 강파이프+ 철골조 - 건축면적/연면적 : 675.2㎡/786.8㎡	허가	'18.3.12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 최고높이 : 5.9m - 현상변경 허가 양성화 ○ 현지조사(2018.2.18/문화재전문위원 ○○○, ○○○) - 본건은 무허가축사 개선(양성화) 사업으로 무단현상변경을 양성화 요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